

## 忠清北道農村所得開發有功者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出者：忠清北道知事

2. 提出日자 및 回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1. 11. 13.

나. 回附日字 : 1991. 11. 13.

3. 提案理由

○ 忠清北道 規則 第1779號 (91. 7. 19) 에 의거 道 職制改編에 따라 忠清北道 農村所得 開發 有功者 褒賞條例中 褒賞者를 決定하기為하여 構成된 農村所得開發有功者 褒賞 審查委員會의 當然職 委員인 “農林局長”과 “殖產局長”의 名稱을 調整 變更하여야 함.

4. 主要骨子

忠清北道 農村所得開發 有功者 褒賞 條例中 有功者 褒賞 審查委員會의 當然職委員

- “農林局長”을 “農漁村開發局長”으로
- “殖產局長”을 “農林水產局長”으로 改正하는 것임.

5. 檢討意見

忠清北道 農村所得開發 有功者 褒賞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檢討한바,

○ 忠清北道 農村所得開發 有功者 褒賞 條例中 褒賞者를 決定하기為하여 構成되어 있는 農村 所得開發 有功者 褒賞 審查委員會의 委員中 農林局長과 殖產局長이 當然職 委員으로 되어 있으나,

- 91. 7. 19자 忠淸北道 規則 第1779號로 職制改編이 됨에 따라 “農林局長”이 “農漁村開發局長”으로 “殖產局長”이 “農林水產局長”으로 각각 所管분장 事務와 名稱이 改編 또는 變更되었으므로 본 條例는 必然코 改正함이 安當하다고 思料 됩니다.

이상으로 忠淸北道農村所得開發 有功者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 參考資料

- 忠淸北道 農村所得開發 有功者 褒賞 條例中 改正條例(案)1部
- 忠淸北道 農村所得開發 有功者 褒賞條例 1部
- 新舊條文 對比表(忠淸北道 農村所得開發 有功者 褒賞條例)1部
- 忠淸北道 規則 第1779號(忠淸北道 職制 規則中 改正規則)寫本 1部

## ◎ 忠清北道農村所得開發有功者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農村所得增大를 通하여 地域社會의 發展에 貢獻한 자에 대하여 受與하는 忠清北道農村所得開發有功者褒賞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자로서 農村所得增大에 크게 寄與한 道內에 住所를 둔 住民, 公務員, 各及團體 任職員 및 機關·團體 研究팀을 대상으로 한다.

1. 소득작목을 研究 開發한 자.
2. 농·수·축·임산업 技術을 研究 開發한 자.
3. 作型을 研究 開發한 자.
4. 농·수·축·임산물 저장, 가공기술을 연구 개발한자.
5. 농·수·축·임산물 유통구조를 창안한 자.

第3條(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학교장 및 기타 기관·단체의 장이나 주민 20명 이상의 推薦이 있어야 한다.

第4條(委員會) 제3조의 規定에 의하여 推薦된 포상대상자를 決定하기 위하여 도에 農村所得開發有功者褒賞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第5條(構成) ①委員會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各 1人을 두되 委員은 14人 이내로 한다.

1. 委員長은 副知事로 하고,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으로 한다.
2. 當然職 委員은 農漁村開發局長, 農林水產局長, 地域經濟局長, 農村振興院 試驗局長, 農協道支會長, 畜協道支會長, 忠北團藝協同組合長이 된다.

3. 위촉위원은 학계, 전문가, 농민대표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4.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農漁村開發課長을 간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포상유공자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第6條(會議 및 議事)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7條(手當과 旅費支給) 公務員이 아닌 委員이 會議에 參席하였을 때에는 忠清北道 各種 委員會 實費辨償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預算의 範圍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지급할 수 있다.

第8條(施行規則) 이 條例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 附 则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忠淸北道農村所得開發有功者褒賞條例

(1990. 9. 21)  
(監制 第1805號)

第1條(目的) 이條例는 農村所得增大를 통하여 地域社會의 發展에 貢獻한 자에 대하여 受與하는 忠淸北道農村所得開發有功者褒賞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褒賞對象) 褒賞對象者는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자로서 農村所得增大에 크게 寄與한 道內에 住所를 둔 住民, 公務員, 各及團體 任職員 및 機關·團體 研究팀을 對象으로 한다.

1. 所得作目을 研究 開發한 자.
2. 農·水·畜·林產業 技術을 研究 開發한 자.
3. 作型을 研究 開發한 자.
4. 農·水·畜·林產物 貯藏, 加工技術을 研究 開發한 자.
5. 農·水·畜·林產物 流通構造를 創案한 자.

第3條(褒賞對象者 推薦) 褒賞對象者는 道의 室·局·院長, 市長·郡守, 學校長 및 其他 機關·團體의 長이나 住民 20名以上의 推薦이 있어야 한다.

第4條(委員會)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推薦된 褒賞對象者를 決定하기 为하여 道에 農村所得開發有功者褒賞審查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第5條(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各 1人을 두되 委員은 14人 以內로 한다.

1. 委員長은 副知事로 하고,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으로 한다.
2. 當然職 委員은 農林局長, 畜產局長, 地域經濟局長, 農村振興院 試驗局長, 農協道支會長, 畜協道支會長, 忠北團藝協同組合長이 된다.

3. 委嘱委員은 學界, 專門家, 農民代表中에서 道知事が 委嘱한다.
4.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農漁村開發課長을 幹事로 한다.

①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褒賞有功者 施賞과 同시 자동 해촉된다.

第6條(會議 및 議事)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员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第7條(手當과 旅費支給) 公務員이 아닌 會員이 會議에 參席하였을 때에는 忠淸北道 各種 委員會 實費辨償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豊算의 범위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8條(施行規則) 이 條例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新舊條文對比表

條例名：忠清北道農村所得開發有功者 褒賞條例

現 行	改 正
第5條(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各各 1人을 두되 委員 은 14人 以內로 한다.	第5條(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各各 1人을 두되 委員 은 14人 以內로 한다.
1. (생략) 2. 當然職 委員은 <u>農林局長</u> , <u>殖 產局長</u> , 地域經濟局長, 農村振興 院 試驗局長, 農協道支會長, 奮協 道支會長, 忠北團藝協同組合長이 된다.	1. (現行과 같음) 2. 當然職 委員은 <u>農漁村開發局 長</u> , <u>農林水產局長</u> , 地域經濟局長, 農村振興院 試驗局長, 農協道支 會長, 奮協道支會長, 忠北團藝協 同組合長이 된다.

内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忠清北道職制規則中改正規則을 이에 公布 한다.

忠清北道知事 李 同 浩 国

1991年 7月 19日

## ◎ 忠清北道 規則 第1779號

### 忠清北道職制規則中改正規則

忠清北道職制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企劃管理室) 第1項中 “企劃擔當官” 다음에 “豫算擔當官”을 新設하고 동조 제2항중 “企劃擔當官” 다음에 “豫算擔當官”을 新設하며, 동조 제3 항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중 “제4항”내지 “제7항”을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企劃擔當官의 分掌事務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소관행정의 綜合企劃 調整
2. 道政의 企劃調整
3. 道綜合開發中長期計劃의 樹立評價 調整
4. 科學技術振興 調整
5. 道政調整委員會 運營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局長은 書記官, 보건기정 또는 환경기정으로 보하고, 社會課長은 行政

事務官으로, 保健課長은 의무기좌, 약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로, 위생과장은 화공기좌 또는 보건기좌로, 환경보호과자는 행정사무관 또는 환경기좌로 보하며, 동조 제6항 중 “環境保護擔當官”을 “環境保護課”로 한다.

“第4條(農林局)”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農漁村開發局) ①農漁村開發局에 農漁村開發課, 農產物流通課, 基盤造成課, 種政課를 둔다.

②局長은 書記官으로 보하고, 農漁村開發課長, 種政課長은 行政事務官으로 農產物流通課長은 行政事務官 또는 農業技佐로 基盤造成課長은 行政事務官 또는 土木技佐로 보한다.

③農漁村開發課의 分掌事務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局所管 行政綜合企劃·調整
2. 農漁村綜合對策業務 推進
3. 農漁民 所得增大事業 推進
4. 農業經營分析 및 效率的 運營
5. 農地의 保全 및 利用
6. 營農組織의 育成指導
7. 種穀加工業 許可(제방업 제외)
8. 種穀 收買交換

“第9條(殖產局)”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農林水產局) ①農林水產局에 農產課, 審產課, 內水面漁業課, 山林課를 둔다.

②局長은 書記官 또는 農業技正으로 보하고, 農產課長은 農業技佐로, 審

產課長은 畜產技佐 또는 수의관(5급)으로, 內水面漁業課長은 水產技佐로  
山林課長은 林業技佐로 보한다.

③農產課의 分掌事務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局所管 行政의 綜合企劃 調整
2. 農業生產의 綜合計劃 樹立
3. 食糧增產計劃의 推進
4. 自給肥料 增產 및 地力增進
5. 農業氣象 및 農產物 災害對策
6. 耕地利用度 向上(低位生產地 改良)
7. 農產物 病蟲害防除 및 예찰
8. 肥料, 農藥, 農器具 등 農業資材의 需給調整
9. 農藥 및 肥料團束
10. 種子更新 및 경종법 改善
11. 주산자 및 경종법 改善
12. 作目開發指導 및 地域特化作目指定 育成